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264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19. 7.

복지문화 위원회
전 문 위 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. 7. 16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홍복조 의원 외 9인
- 발의일자: 2019. 6. 13.
- 회부일자: 2019. 7. 4.
- 검토기간: 2019. 7. 5. ~ 2019. 7. 12.

2. 제정이유

- 현행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·축·수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신청 및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지원된 급식경비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4. 관계 법령

-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- 현 「학교급식법(이하 ‘법’)」에 따르면,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학교급식을 실시하여야 하며, “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·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·경영자가 부담하되(법 제8조)”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(법 제3조)”고 규정.
- 동 안은 위 ‘법’에 취지에 맞춰, 학교급식 지원 대상(안 제3조)에 대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·축·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구청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(안 제4조)하되, 지원대상자 선정, 지원규모와 내역,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달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(안 제6조)하는 한편, 지원된 급식경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·감독권한을 갖도록 하는(안 제8조) 등 일련의 제도적 틀을 마련.
- 따라서 동 안은 결국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 및 이를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구현하고자 구청장으로 하여금 우수식재료 사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는 등, 현행 학교 급식 지원 방식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는 바, 동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【별첨】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서

1. 발의연월일: 2019. 6. 13

2. 발 의 자: 홍복조 의원 등 10명(안대국, 이신자, 윤권근, 정창근, 배용식,
김태형, 김화덕, 김정윤, 박정환)

3. 제안이유

- 현행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·축·수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신청 및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지원된 급식경비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5. 참고사항[관계법령]

- 학교급식법 제3조, 제4조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수식재료보조금 지원 근거와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·축·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지원 방안을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,
- 아울러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·축·수산물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고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 없음.

[관계법령]

□ 학교급식법

제4조(학교급식 대상)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·고등학교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해당 연도 교육경비 지원계획 심의
2.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보조사업 조정
3.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
4. 보조금의 지원 규모
5.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